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북도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1	73,519
여성정책추진사업	11	10,26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55,22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8	8,03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4-1] 2017년 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buk.go.kr/finance/contents.do?key=86132>)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모델 2안과 3안을 혼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323,586	168,673	2~3안 준용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4-2] 2017년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참조하세요
(<http://www.chungbuk.go.kr/finance/contents.do?key=86132>)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4-3.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북도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9	130	296	319	3,868,482	3,748,687	119,795
공보관	1	1	4	4	4,082	3,959	124
감사관	1	1	5	2	303	323	-20
여성정책관	1	2	6	6	30,170	29,213	957
혁신도시관리본부	1	1	3	2	754	3,418	-2,664
기획관리실	1	10	16	21	258,486	239,340	19,146
재난안전실	1	8	18	18	162,983	137,038	25,945
행정국	1	7	29	25	511,895	493,511	18,384
보건복지국	1	9	13	18	1,306,163	1,232,083	74,081
경제통상국	1	16	24	28	148,082	109,077	39,005
농정국	1	6	17	22	354,111	383,850	-29,738
문화체육관광국	1	8	19	21	226,971	229,324	-2,353
균형건설국	1	7	16	21	180,790	189,469	-8,679
바이오환경국	1	10	16	21	231,146	257,860	-26,715
소방본부	1	15	30	29	288,016	274,736	13,279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	4	11	8	6,004	14,310	-8,306
의회사무처	1	1	4	4	9,983	9,872	112
자치연수원	1	1	3	3	5,644	5,093	551
농업기술원	1	3	14	16	36,054	31,565	4,489
보건환경연구원	1	1	3	5	8,294	7,713	581
도로관리사업소	1	3	5	7	35,424	35,471	-46
산림환경연구소	1	1	3	3	23,459	28,187	-4,729
축산위생연구소	1	5	11	11	12,749	11,481	1,268
농산사업소	1	2	10	6	3,448	3,131	317
청남대관리사업소	1	1	2	4	8,643	6,501	2,142
여성발전센터	1	1	4	5	2,554	2,144	410
내수면연구소	1	1	3	3	3,363	3,318	45
서울세종본부	1	1	1	1	557	587	-30
북부출장소	1	1	2	1	1,106	1,046	61
남부출장소	1	3	4	4	7,246	5,068	2,17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4-3]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buk.go.kr/finance/contents.do?key=86132>)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1.80	46.78	32.97	25.27	61.68	12.0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당초예산서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buk.go.kr/finance/contents.do?key=86132>)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67	167	-
	부단체장	233	233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73	1,186	△28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23	223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01	201	-
	의원국외여비	101	101	-
지방보조금		65,950	30,824	△35,12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54천원/1인	4,763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1인	995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준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산출내역 (기준인원)	예산편성액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67,200	1인	167,200	
	부단체장	116,600	2인	233,2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73,143		1,186,40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본	6,100	31명	189,100
		예결위	2,000	13명	26,000
		의정활동 증액	7,594		7,59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50,400	1	50,400
		부의장	25,200	2	50,400
		상임위원장	15,600	6	93,600
		예결위원장	6,500	1	6,500
	의원국외여비	의원	2,500	31	77,500
		국제회의 자매결연교류	23,250		23,250
	지방보조금		65,950,444		30,824,013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1,254	3,755	4,708,770	
	기간제근로자	300	180	54,000	
공무원 일·숙직비		50		994,850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7,518	7,053
인건비 절감	-	53
지방의회경비 절감	36	11
업무추진비 절감	285	11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1,71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476	4,512
지방청사 관리·운영	721	646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12.30.교부결정),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 20,365	△ 12,127
지방세 징수율 제고	△ 5,020	2,535
지방세 체납액 축소	△ 17,496	△ 15,254
경상세외수입 확충	2,251	70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49	△ 46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51	△ 62

-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12.30. 교부결정),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6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68
법령위반 과다지출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 구축 관련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13
법령위반과다지출, 예산편성기준위반	의원 연구활동비 예산 운용 부적정	125
수입징수 태만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등업무처리 부적정	5
법령위반 과다지출	원서천 백운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	25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입니다.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6년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공기업혁신 (정부시책준수 우수기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추진 및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정비	2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4-8] 2017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인센티브 배분 내역을 참조하세요

(<http://www.chungbuk.go.kr/finance/contents.do?key=86132>)